

토지대장으로 살펴본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원주시 호저면의 사례*

조 석 곤**

Key words: 토지대장(a land register) 토지소유권(landownership), 식민지주제(colonial landowner system), 자작농체제(landed farmer system)

ABSTRACT

This article shows the trends of landownership during 1915-1977 in Hojeo Myun, Wonju City. We can divide this time span with three periods, the expansion period of colonial landlord system(1915-1942), the dissolution period of colonial landlord system and formation of landed farmer system(1943-1964), and period of mobilizing land(1965-1977). From the early 1940s to Korean war, many arable lands transformed to forest. it shows that the land productivity shrank during this time. The Gini coefficient increased by the early 1940s, and decrease by the late 1960s and increase again after then. The average area of landowner have decreasing trends consistently.

- 1. 머리말
- 2. 토지소유구조의 일반현황
- 3. 토지소유구조의 장기변동
- 4. 맺음말

1. 머리말

20세기 한국의 토지제도는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근대적 장부체계를 갖추었으며,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적소유권을 인정하였

다. 해방 이후 농지개혁이라는 중요한 토지제도상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역시 절대적인 사적 소유권에 기초한 것이었다. 토지조사사업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타적 사적 토지소유권제도는 큰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법적 체계와는 별도로 식민지시대에는 식민지주제라고 불리는 농업경영형태가 발달하였으나, 해방 후 식민지주제

* 이 글은 2002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다.

** 상지대, 경제학.

는 농지개혁에 의해 급격하게 해체되었다. 농지개혁에 관한 최근 연구(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장상환 1999; 신기욱 2001)들은 농지개혁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식민지주제를 해체시켰다는 사실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식민지주제가 쇠퇴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다. 전통적인 설명방식은 식민지주제가 해방 시점까지 강화되었거나 지속되었다는 것인데(전강수 1993), 1930년대 일제의 농정방향이 변화하면서 그것이 식민지주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19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식민지주제가 정체 내지 약화되는 상태에 들어간다는 주장이 그것이다.(박석두 1987; 이종범 1988; 이종범 1989; 정승진 1997) 박섭(1994)은 식민지공업화의 진전의 영향으로 1940년대 이후 지주제는 축소국면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신기욱(2001)은 지주제의 쇠퇴를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식민지공업화보다는 소작쟁의와 소작입법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제약이 지주의 자본전환을 부추겼다고 보았다. 반면 정연태(1995)는 지주제의 정체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현상적인 파악에 불과하며, 이 시기 변화의 진정한 의미는 “지주제가 일인 지주 중심으로 재편되고, 금융자본과 일제권력에 대한 지주의 종속성이 심화되었다”(정연태 1995: 130)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식민지주제의 쇠퇴시기에 대해서는 해방 이전까지는 본질적으로 유지·심화되었다는 주장에서부터 1930년대 중반,

혹은 1940년대 초반부터 쇠퇴가 시작되었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며, 쇠퇴시점을 앞당기는 주장의 경우도 그 원인에 대해서 식민지공업화에 따른 지주제의 수익성하락, 일제농정기조의 변화 등에서 찾는 등 다양하다.

본고는 토지소유구조라는 관점에서 20세기 한국의 토지제도의 변화를 검토하면서 식민지주제의 쇠퇴, 농지개혁의 효과 등에 관한 기존 논의에 일정한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토지소유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토지대장』이다. 토지조사사업 때 작성된 『토지대장』은 1977년 카드제양식으로 전환할 때까지의 토지소유권 변동과 지세부과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소유구조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분석 대상 시기는 1915년부터 1977년까지이다.¹

토지대장을 이용하여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로는 이종범(1988; 1989), 정승진(1997)이 있다. 무안군 망운지역(이종범 1988), 광주시 하남지역(이종범 1989), 서천군 수리조합지역(정승진 1997)을 분석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1930년대 후반 지주제의 쇠퇴를 지적하고 있다. 본고 역시 이들 연구와 동일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를 살펴본다. 분석대상 지역을 면 단위로 잡은 것은 동일하지만, 분석시기는 식민지기로 한정하지 않고 해방이후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또 매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토지대장』상의

¹ 원주시의 사정공시일은 1917년 6월 1일인데(『보고서』: 430) 『토지대장』에는 1915년 5월부터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다.

이러한 시계열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가 지니고 있는 자료상의 한계는 여전히 극복할 수 없었다. 즉 토지대장은 토지소유권의 변동을 정확하게 추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장부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첫째, 토지대장이 실제의 토지소유권변동을 즉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토지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경우 그것을 등기하게 되면 행정관청은 토지대장에 그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되었지만,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동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다. 둘째, 토지대장은 토지소유자를 개인명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농가단위의 토지소유구조 변동을 추적하는 데는 난점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토지를 가족원 이름으로 분산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소유의 집중도는 현실보다도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토지대장은 토지소유권에 관한 장부이므로 농업경영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본고가 농업경영에 관해 전혀 분석할 수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토지소유구조의 장기변동을 보여주는 장부로는 『토지대장』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한 후에 본고에서는 우선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만을 살펴본다.² 조

² 토지대장에는 토지등급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력구조를 어느 정도까지는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토지소유구조의 변동이라는 본고의 과제와는 다른 것이어서 별도의 과제로 미룬다.

석곤(2001)은 이러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예천군 용문면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고는 동일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용문면보다 더 도시에 가까운 원주시 호저면을 대상으로 소유구조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³

분석대상은 원주군 호저면 중에서 7개리이다. 호저면 행정구역을 보면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가현, 우산, 만종, 사천, 주산, 옥산, 고산, 광격, 대덕 등 9개리였으나, 1938년 사천리가 원주시 단계동으로, 1955년 9월 우산리가, 1973년 7월 가현리가 각각 원주시에 편입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계동과 우산동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1973년에 빠져나간 가현리는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⁴

논의의 순서는 2절에서는 토지소유구조의 일반현황을 지목별 경지면적의 증감, 토지소유자의 거주지별 토지소유규모의 변화등을 통해 분석한다. 3절에서는 토지소유

³ 필자는 이 작업을 예천군 용문면, 원주시 호저면, 김제시 죽산면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계획하였다. 용문면은 조석곤(2001)로 출간되었으며, 죽산면은 현재 준비 중이다. 각 지역은 식민지주체제의 발달 여부, 산업화·도시화와의 관련 여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⁴ 입력대상 토지대장은 총 35권으로 필지수는 9940필지였다. 리별로는 광격리 5권 1,403필지, 주산리 8권(폐쇄 1권 포함) 2,244필지, 가현리 5권 1,704필지, 옥산리 2권 549필지, 고산리 3권 785필지, 만종리 7권(폐쇄 1권 포함)2,095필지, 대덕리 5권 1,160필지이다. 옥산리의 경우 원래 토지대장이 3권이었으나 1권이 망실되어 입력할 수 없었다. 주산리의 경우 무슨 사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복구된 토지대장이 존재한다. 복구한 대장의 지번은 174-258, 401-600, 980-990번지인데, 해당 지번의 경우 1962년 5월 이전의 정보는 알 수 없다. 후술하는 과정에서 드러나지만 1962년에 면적상에 단층이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표 1. 호저면 연도별 지목별 필수 및 면적

지목	전	답	임야	대지	근대1)	수리2)	기타	
1915	3,012 1,874,202	2,402 1,634,862	94 271,388	568 111,567	3 2,389	1 47	19 3545	6,099 3,898,000
1922	3,129 1,901,582	2,526 1,646,307	101 271,475	576 110,141	48 4,281	1 47	19 3545	6,400 3,937,378
1929	3,503 1,884,990	3,299 1,649,588	125 275,628	610 110,160	225 9,067	2 384	20 3482	7,784 3,933,299
1936	3,782 1,873,301	3,658 1,644,514	164 291,940	680 112,732	227 9,199	12 3,662	18 3484	8,541 3,938,832
1943	3,758 1,834,103	3,734 1,663,709	191 293,583	671 110,877	368 40,532	18 4,798	18 3229	8,758 3,950,831
1950	3,901 1,818,307	3,891 1,639,688	251 321,148	752 118,215	372 40,946	68 23,491	18 3229	9253 3,965,024
1957	4,102 1,791,606	5,038 1,644,711	277 326,029	796 131,509	401 41,232	162 30,190	19 3513	10,795 3,968,790
1964	3,818 1,708,951	4,345 1,734,916	483 372,990	1,054 155,045	499 44,229	230 44,844	38 15,959	10,467 4,076,934
1971	3,904 1,668,179	4,052 1,682,954	401 336,795	1,088 158,327	699 95,249	205 46,165	256 121,235	10,605 4,108,904
1977	4,074 1,666,922	3,904 1,629,648	426 334,279	1,397 335,493	1,164 146,335	284 145,122	104 44,570	11,353 4,302,369

자료: 호저면, 『토지대장』(이하 별도의 자료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이 자료에 따른다)

주: 1) 도로, 철도, 수도용지 등 근대적 시설의 도입과 관련된 지목의 합계

2)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등 수리시설과 관련된 지목의 합계

규모의 장기변동을 토지소유구조의 불평등 조, 계층별 토지소유규모의 변화, 토지매매 현황 등을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러한 분석이 연구사에 시사하는 점을 정리하고 이후의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기하기로 한다.

므로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표로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변동을 보일 때는 주로 그래프를 이용한다. 다만 절대치를 제시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므로 7년 간격으로 대표 연도를 지정하여 해당 연도의 수치를 표로 제시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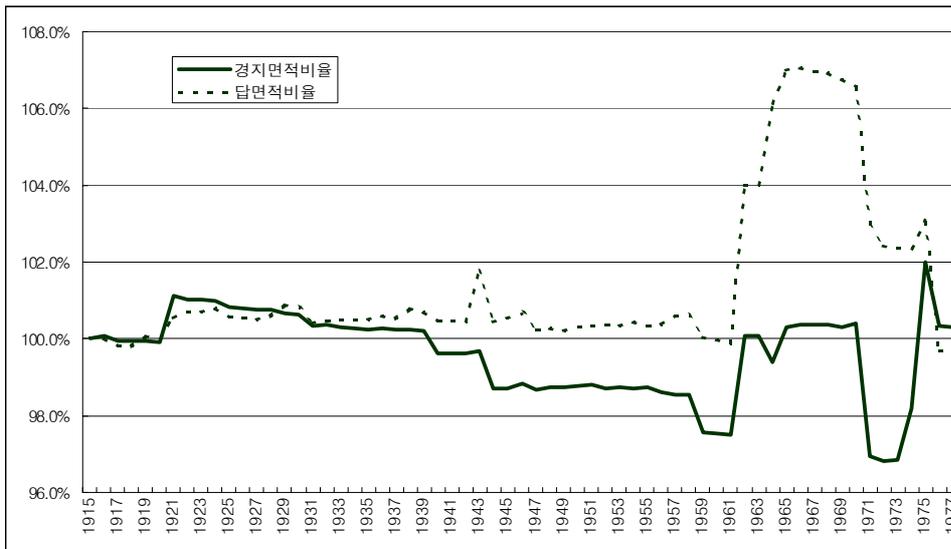
<표 1>은 호저면 연도별 지목별 필수 및 면적을 정리하였다. 토지대장상의 총필

2. 토지소유구조의 일반현황

토지소유구조의 장기변동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일은 각년도 말을 잡았다. 예를 들면 경지면적에서 연도가 1930년이라면 1930년 12월 31일 현재의 경지면적을 의미한다. 60년이 넘는 장기시계열을 분석하는 것이

⁵ 비교 분석을 위해 조석곤(2001)의 기준을 그대로 차용한다. 선택된 연도는 1915, 1922, 1929, 1936, 1943, 1950, 1957, 1964, 1971, 1977년 등 10개 년도이다. 7년은 임의적으로 선택된 것이지만, 어떤 연도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29년은 소화공황 직전으로 식민지주체의 관점에서 가장 여건이 좋았던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은 농지개혁 직전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림 1. 호저면 경지면적과 담면적의 시기별 추이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분필 등에 따른 필지수의 증가와 신규토지의 편입 등을 반영하고 있다. 총면적은 약간씩 증가하곤 있지만 큰 변화가 없다가 1960년대 이후 증가세가 나타났는데, 개발에 따른 신규 필지의 편입을 반영한 것이다. 토지대장에 등재된 모든 필지의 총면적은 1915년 말 기준으로 6,099필지에 3,898,000평이며 이중 경지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중은 92.9%였다. 그런데 이 비중은 식민지시대에는 비록 감소 추세를 보이긴 하였지만 1943년에도 91%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경지면적의 비중은 196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여 1970년대가 되면 85% 수준을 하회하게 되었다.

총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지면적이 감소한 것은 대지와 임야 면적이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로, 철도, 수도용지 등 근대적 시설과 관련된 필지의 증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등 수리시설과 관련

된 필지의 증가도 한 원인이었다.⁶ 임야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1940년대 초반 및 1960년을 전후한 시기에 급증한다. 이는 예천사례(조석곤 200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생산성의 후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⁷

호저면의 경지면적의 연도별 상대적 변화는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그림을 해석할 때 유의할 점은 1960년대 초반 및 1970년대 초반의 급격한 변화는

⁶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15년과 1977년 사이에 대지면적은 2.9%에서 7.8%로 근대시설 관련지목은 0.0%에서 3.4%로, 수리시설관련 지목도 0.0%에서 3.4%로 증가하였다.

⁷ 1943년 97.9정보였던 임야는 다음해 104.2정보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58년 108.7정보에 이르렀다가 1959년에 118.0정보로 다시 급증한다. 그리고 1964년 124정보를 피크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43년은 전년도에 비해 전체면적은 1.1정보가 감소하였으며, 1959년도에는 3.3정보가 증가하였을 뿐이다. 1944년에는 담의 임야화가, 1959년에는 전의 임야화가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토지대장이 가지고 있는 장부상의 특징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앞서 자료 소개에서 말했지만, 주산리 일부 필지의 경우 토지대장이 복구되어 그 때까지의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1960년대 초반 면적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70년대 초반의 변화는 경지정리에 따르는 장부상 정리의 시차를 반영하고 있다.⁸ 이 그림을 해석할 때는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915년의 경지면적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60년대까지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앞서 본 것처럼 특히 1944년 및 1959년의 감소가 현저하다. 이후 1960년대 초반 급증하여 1910년대의 수준을 회복한다. 1970년대 초반의 급격한 변화는 경지정리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답의 면적은 식민지시대 뿐 아니라 1960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 없이 진행되다가 1960년대 이후 급증한다. 1960년대 초반의 급증은 토지대장 복구에 따른 것이라 해도 1960년대 중반의 그것은 하천 지목으로부터 변화한 것이 많다. 그 후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다시 원래 규모로 감소한다. 이러한 답 면적의 변화로부터 우리는 1960년대 일부 토지에 대한 답으로의 개간이 급격히 진행되었지만, 해당 토지의 생산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경작이 포기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박 정권이 농업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정했던 「개간촉진법

」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상 토지이용의 결과를 총괄하면 식민지시대의 경지면적은 특히 전 면적에 있어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이것은 근대적인 시설로의 편입 혹은 임야로의 전환(경지의 유희화)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특히 이러한 변화가 194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다. 경지면적의 감소경향은 1960년대 초반 개간을 통해 약간 회복하였지만 그 규모에 있어서는 1910년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⁹

이제 호저면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주지별 경지보유면적을 살펴보자. <표 2>는 호저면내에 거주하는 사람과 면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¹⁰ 면내 거주자는 1915년에 59.4%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식민지 기간 동안에 그 비율이 점차 감소하여 40%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해방 이후 농지개혁의 영향으로 면내 소유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 추세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추세적 변화 경향은 용문면의 사례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다만 비율로

⁹ 경지면적의 하락경향은 예천군 사례(조석곤 2001)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방전후의 시기,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농업생산력 파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¹⁰ 면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같은 군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다른 면에 거주한다면 현실적인 경작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이다. 물론 같은 면에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경작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군을 기준으로 하여 군내 거주자와 군외 거주자로 구분할 경우 군내 거주자의 소유면적 비율은 해방 연도별로 각각 해방 전에는 72.4, 69.3, 65.0, 65.5, 62.8%였으며, 해방 후에는 80.2, 81.4, 84.7, 86.5, 88.3%였다.

⁸ 1971년 7월 주산리의 토지가 경지정리에 들어갔다가 1974년 토지대장의 정리가 완료되었는데, 장부상의 정리일자의 차이가 그래프에 반영된 것이다.

표 2. 호저면 경지소유자의 거주지별 경지보유면적

연도	필지수			면적		
	면내소유자	비율	면외소유자	면내소유자	비율	면외소유자
1915	688	57.5%	509	2,149,106	59.4%	1,471,525
1922	736	55.8%	582	2,022,686	55.3%	1,635,344
1929	770	52.3%	701	1,884,158	51.7%	1,760,580
1936	793	50.5%	777	1,722,181	47.4%	1,908,366
1943	824	49.0%	859	1,612,799	44.7%	1,995,890
1950	1,310	61.0%	836	2,338,871	65.4%	1,237,339
1957	1,399	62.7%	831	2,411,961	67.6%	1,155,865
1964	1,721	66.3%	875	2,623,969	72.9%	974,943
1971	1,899	68.2%	887	2,598,117	74.0%	911,343
1977	2,027	70.5%	850	2,786,366	76.7%	845,697
평균	1,217	61.2%	771	2,215,021	61.4%	1,389,689

보면 용문면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 25% 정도의 격차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조석곤 2001) 이는 호저면이 용문면에 비해 면외 거주자의 소유면적이 더 많았음을 의미하며, 이 지역이 예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주제가 더 발달한 지역임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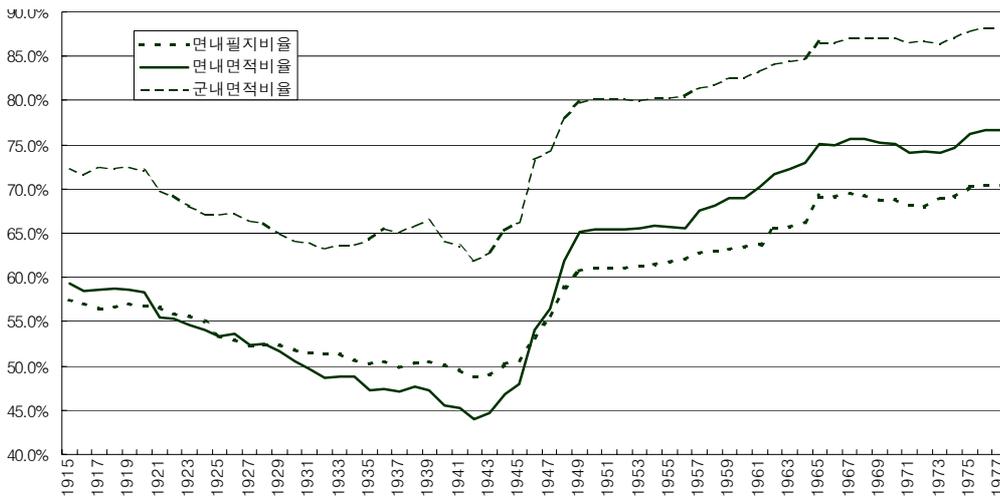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민지시기와 1960년대 이후는 모두 토지소유규모의 불평등도는 심화되는 시기였지만, 면내 거주자의 토지소유규모는 반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식민지기에는 면내소유자의 경지보유면적이 감소하면서 불평등도가 심화되었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면내소유자의 경지보유면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불평등도는 심화되었던 것이다. 이는 식민지기 토지집적이 주로 부채지주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1960년대의 그것은 면내 거주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3정보 소유상한이나 비농민의 토지소유 금지 등과 같은 제도적 요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작농 사이에서도 소

유분해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2>를 통해 경지소유자의 거주지별 소유 필지수 및 면적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필지수로 보면, 소유면적으로 보면 그 추세는 동일하지만 면적보다 필지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완만하다. 식민지기 부채지주의 토지매입은 평균적으로 대규모 필지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같은 이유로 1960년대 이후 면내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입도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필지에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서도 분명하지만 면내 거주자의 토지보유면적비율에서 전환점이 된 것은 1942년의 44.0%였다. 이는 면내거주자의 토지매입시점이 이미 1940년대에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상당 부분은 식민지주제 하에서 이익을 향유하고 있던 부채지주의 소유토지는 1940년대 초반 면내소유자에게 매각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식민지주제의 쇠퇴가 이미 1940년대 초반에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

그림 2. 경지소유자의 거주지별 소유 필지수 및 면적의 연도별 추이



른 증거이다.

이렇게 시작된 면내 거주자의 토지매입은 해방정국에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농지개혁이 개시되기 직전까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1950년대는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유동화 제한의 영향으로 소유규모의 변화가 정체되어 있지만, 1950년대 말부터 다시 보유면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용문면의 사례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큰 차이는 전환점의 시점이다. 용문면의 경우 면내 거주자 보유면적비율은 1936년이었음에 반해(조석곤 2001) 호저면의 그것은 1942년이였다. 이 차이는 앞서 지니계수의 추이에서 나타났던 두 지역의 차이와도 연관되는데, 호저면에서의 식민지주제가 더 생명력이 강하였음을 보여준다. 두 사례의 비교에 근거한 한계를 전제하고, 좀 무리하게 추론한다면 용문면의 경우 호저면에 비해 식민지주제의 발달 정도가 낮았

으며, 그것은 1930년대 초반 농업공황의 충격을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다. 반면 호저면은 1930년대 농업공황에 대해 좀더 강하게 버텼으며, 뒤이은 호조건 속에서 다시 식민지주제에 의한 토지집적이 여전히 지속된 것이었다. 그러나 1940년대의 통제경제하에서 시장조건에 기대던 식민지주제의 장점이 사라지면서 지주제는 쇠퇴하게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호저면의 전환점이 늦은 것은 식민지주제의 상대적 강고함의 반영이며, 일종의 경로의존이었던 셈이다.

3. 토지소유구조의 장기변동

3.1. 토지소유규모 불평등도의 장기 추이

토지소유규모의 장기변동을 분석하기 위해 불평등도의 추이와 계층별 소유규모의 변화를 살펴본다. 먼저 토지소유규모의 불평등도를 살펴보자. 흔히 토지소유규모의

표 3. 수정지니계수

연도	지니계수	순소작농비율	수정지니계수	순소작농 비율의 출처
1915	0.6132	0.360	0.7524	『조선농업발달사』 부표 3
1922	0.6222	0.408	0.7763	
1936	0.6527	0.556	0.8494	
1950	0.5725	0.081	0.6071	『농지개혁사연구』(1989), 1029
1964	0.5577	0.138	0.6187	농수산수,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1977	0.5958	0.182	0.6694	

그림 3. 호저면 토지소유의 연도별 지니계수



불평등도를 재는 척도로는 지니계수를 사용한다. 그런데 토지대장을 이용해서 지니계수를 계산할 경우 무토지소유농민은 그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가진다. 또 해방 이후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등에 따라 소유의 분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격상 동일 경영체에 속한 토지도 다른 소유자의 명의로 등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불평등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¹¹

<그림 3>을 보면 호저면의 지니계수는 0.55에서 0.66사이의 값을 가지고 변동하고 있다. 0.5와 0.63 사이에서 변동한 용문면보다 약간 불평등도가 높은 편이지만(조석곤 2001), 1915년에 이미 0.76수준을 보인 녹산면(조석곤 2001)보다는 매우 평등한 편이다.

다만 이 그림 상의 수치는 무토지소유농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실제의 지니계수는 이보다 높을 것이다. 토지대장상에 토지소유자로 나타나지 않는 순소작농과 피용자 등을 고려하면 지니계수는 훨씬 낮아진다. 예를 들면 1915년의 경우 순소작농이 총농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였으므로

¹¹ 이것이 지니계수의 값에 미치는 효과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영세토지소유자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지니계수의 값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니계수를 다시 계산하면 0.7524이 된다.¹² 이를 고려하여 몇 개 연도의 지니계수를 계산하면 <표 3>과 같다.

이러한 수정을 가한다 하더라도 지니계수 변화의 추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그림 3>을 이용하여 불평등도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자. 1915년의 지니계수는 0.6132였다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1932년 0.6584에 도달하였다가, 농업공황시기에 약간 불평등도가 완화된다. 그 후 1937년 0.6491을 저점으로 다시 악화되어 1942년 0.6622으로 최정점에 도달한 후 1945년 0.6475, 1949년 0.5748 등과 같이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이후 1960년 0.5575에 이를 때까지 완만하게 감소한 후 정체되어 있다가 1964년 0.5577을 기점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7년 0.5958에 이르렀다.

식민지기 불평등의 심화, 농지개혁과정에서의 급격한 불평등도 완화, 1960년대 이후의 불평등 심화라고 하는 예천 사례(조석곤 2001)의 패턴은 이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양 사례의 차이점부터 살펴보자. 첫째, 용문면의 경우 1910년대 불평등도의 완화현상이 나타났지만 호저면에서 그러한 현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호저면에서는 농업공황의 시기에 일시적으로 소유규모의 불평등도가 완화되었지만, 용문면에서는 그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불평등도가 악화되고 있었다. 셋째 용문면에서는 불평등도가 다시 악화되는 시기가 1960년대 말이지만, 호저면에서는 1960년대 중

반부터 이미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요인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외부와 고립된 용문면과 원주읍(시)이라고 하는 도시지역에 인접한 호저면과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의 차이는 용문면에서 지주체는 호저면보다 뒤늦게 발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후 전반적인 식민지지주체의 전개 추세에 용문면도 편입되었음을 보여준다. 셋째의 차이는 1960년대 이후의 토지소유불평등도가 농업자체의 요인보다는 도시화 추세와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¹³ 특히 농지개혁법이 엄격하게 제한한 농지유동성이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조석곤 2001).

그렇다면 우리는 두 지역의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유규모 변화의 패턴을 읽을 수 있다. 191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1940년대 초반까지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가 농지개혁과정에서 급격하게 개선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농지개혁 이후에도 지속되어 1960년대 초반까지는 토지소유의 불평등도가 계속 완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이후에 다시 소유규모의 불평등도는 악화되기 시작한다. 호저면의 경우 이러한 소유규모의 불평등

¹² 계산방식은 순소작농의 비율을 R이라 하면 “수정 지니계수= $r+(1-r)*지니계수$ ”이다.

¹³ 둘째의 차이는 식민지지주체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농업공황에 더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소유규모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쪽으로 나타날 이유는 없는 것이어서 이후 다른 사례의 발굴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라는 관점에서 시기를 구분해 본다면 크게 1942년과 1964년을 획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3개의 시기가 존재한다.¹⁴

제1기. 불평등도 惡化期(1915-1942):

식민지지주제 발전기

제2기. 불평등도 緩和期(1943-1964):

식민지지주제의 해체와 자작농체제의 시기

제3기. 불평등도 再惡化期(1965-1977):

농지유동화기

이 두 사례로부터 관심을 끄는 것은 불평등도의 최정점이 1940년대의 초반에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식민지지주제의 쇠퇴시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인데, 조석곤(2001)은 식민지지주제는 이미 1940년대에 들어서면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해방과 농지개혁은 그것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호저면의 사례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용문면의 경우 토지소유규모에 관한 한 식민지지주제는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포화상태’를 넘어서서 이미 쇠퇴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조석곤 2001: 401)는 주장은 호저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식민지지주제는 식민지붕괴 이전에 이미 해체의 길을 걷고 있었고 농지개혁은 그것을 가속화시켜 완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사례 연구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것은 식민지지주제는 1940년대에 들어오면 분명

히 퇴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천과 달리 호저면은 인접지에 원주읍이 있었지만, 원주읍의 노동력 흡인력이 지주제 쇠퇴의 본격적 원인이라 할 수는 없다. 지주제 쇠퇴의 원인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이 시기에 실시된 공출제이다.

일제가 조선에서 미곡통제를 시행한 것은 1939년부터이지만 본격적인 생산출하통제 즉 공출을 시행한 것은 1941년부터였다. 이송순(1995)은 공출제의 시행이 소작료의 인하, 소작료를 소작인이 직접 공출함에 따른 상업적 이윤의 상실, 낮은 공정가격 등으로 지주의 경제적 손실을 강화하였으며, 지주제도 약화되어 갔다고 주장하였다.

공출제의 시행은 확실히 지주제에 결정적 타격을 가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식민지지주제가 생산력적 기초위에 근착하고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유통기구, 즉 시장교역조건에 상대적인 유리함에 기댄 불안정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1930년대 농업공황기나 공출제 실시 이후에 대농층의 농지보유면적이 감소한 것은 가격조건의 변화가 식민지지주제의 존속에 결정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3.2. 계층별 소유규모의 장기 추이

이제 호저면에 경지를 보유하고 사람들을 호저면에 보유하고 있는 경지규모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장기적인 소유규모동태를 분석하기로 하자. 통상 경영규모를 나눌 때 사용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소유규모도 6단계로 구분하기로 한다. 즉 소유규모가 5단보 미만의 영세농은 I 그룹, 1

¹⁴ 용문면의 경우 획기는 각각 1941년과 1969년이었다(조석곤 2001).

표 4. 호저면내 경지보유자의 소유규모별 현황

연도	I	II	III	IV	V	VI	계	평균면적
1915	436	416	208	59	48	30	1,197	3,025
	209,675	706,585	869,934	430,602	551,154	852,681	3,620,631	
1922	527	456	206	66	34	29	1,318	2,775
	248,427	781,474	861,631	485,237	406,533	874,728	3,658,030	
1929	700	460	186	53	43	29	1,471	2,478
	322,240	764,416	772,343	390,692	494,020	901,027	3,644,738	
1936	781	485	181	53	41	29	1,570	2,312
	343,967	809,490	754,647	389,350	477,884	855,209	3,630,547	
1943	881	516	171	51	32	32	1,683	2,144
	377,814	849,239	712,094	361,483	373,509	934,550	3,608,689	
1950	1,106	726	210	62	31	11	2,146	1,666
	495,640	1,198,506	865,604	444,991	357,686	213,783	3,576,210	
1957	1,169	739	222	65	26	9	2,230	1,600
	520,443	1,201,485	916,540	474,039	291,287	164,032	3,567,826	
1964	1,455	842	231	46	18	4	2,596	1,386
	629,329	1,355,265	936,600	340,587	198,533	138,598	3,598,912	
1971	1,634	847	242	48	12	3	2,786	1,260
	629,319	1,370,683	965,877	351,734	136,644	55,203	3,509,460	
1977	1,742	830	247	43	11	4	2,877	1,262
	646,593	1,350,659	964,445	315,293	123,520	231,553	3,632,063	

주: 연도별로 윗줄은 경지소유자의 수, 아랫줄은 그들의 보유면적 총합이다.

정보 미만의 소농은 II그룹, 2정보 미만의 중농 하층은 III그룹, 3정보 미만의 중농 상층은 IV그룹으로 나누고 3정보 이상의 상농층은 다시 5정보 미만의 V그룹과 5정보 이상의 VI그룹으로 나눈다.¹⁵

계층별 인원 및 소유면적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이 전체 면적은 양간의 부침이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소유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결국 60여 년간 2.5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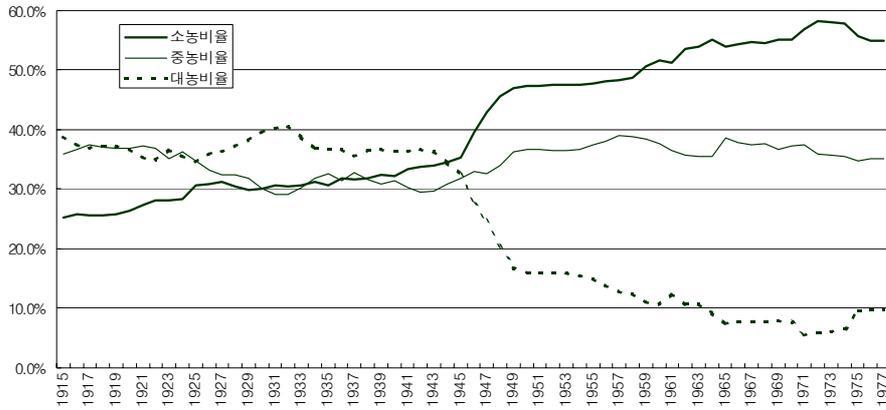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농지개혁기간인 1943년부터 1950년 사이에 무려 30%의 소유자수 증가가 있었다. 특히 해방 이후에는 토지대장이 지니고 있는 장부상의 특성¹⁶도 결합하여 토지소유규모의 영세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토지조사사업 당시 1정보 내외였던 1인당 토지소유규모는 1970년대 후반이 되면 0.4정보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¹⁵ 물론 이 소유규모가 해당 지주의 전체 소유지가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본고의 분석대상이 되는 토지는 호저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항의 분석은 소유자의 경지보유규모를 항상 과소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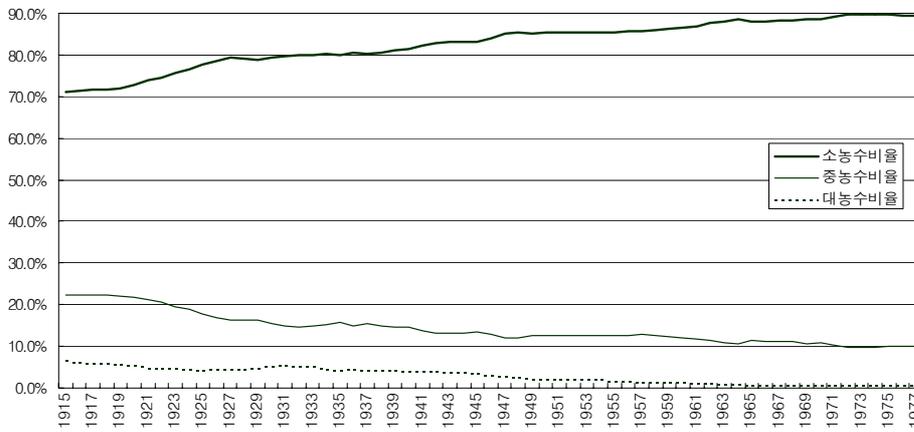
¹⁶ 토지대장은 토지경영상의 정보가 아닌 토지소유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 상속 이농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화는 실제 경작자의 변화여부와 상관없이 토지대장에 기록되는데, 대개 이는 토지소유규모를 세분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그림 4. 호저면 경지소유자의 소유규모별 소유자수 및 소유면적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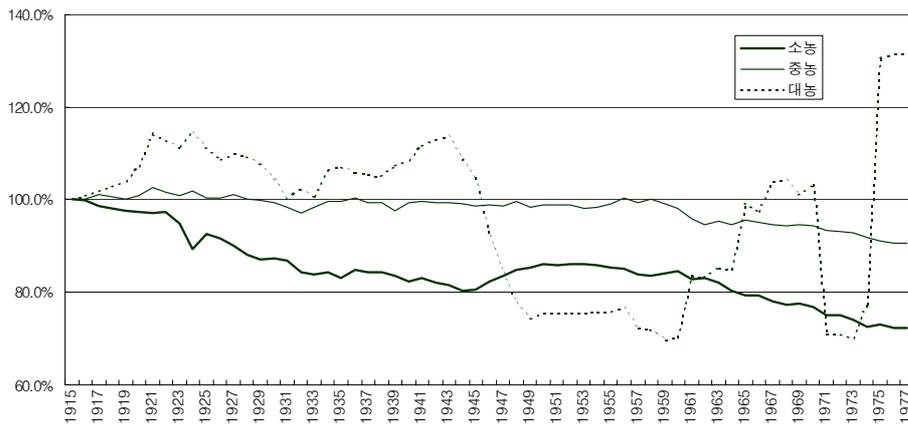
가) 소유면적



나) 소유자수



다) 평균보유면적



3정보 이상의 대토지소유자의 수는 해방 이후 감소하고 있다. 농지개혁이 지주층의 해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탓이다. V등급 소유지의 숫자 감소가 완만한 것은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이 1960년대 중반까지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VI등급 지주의 숫자 감소는 194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식민지시주제의 구조적인 해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림 4>를 통해 계층별 토지소유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자. 논의의 편의를 위해 1정보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소농, 3정보 미만의 토지소유자를 중농, 3정보 이상의 토지소유자를 대농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먼저 소유면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농의 소유면적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940년대 후반에 급증하고 있다. 식민지시기동안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던 대농의 소유면적비율은 1940년대 후반 급감하였으며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였다. 중농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30%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식민지시기에는 완만한 하락세, 해방 이후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호저면에서 3년 이상 VI등급 소유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은 모두 77명인데 이들의 보유면적과 존속기간을 <부표 1>에 정리하였다.¹⁷

그러나 소유자 수의 변화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농수의 비율은 토지조사사업 당시에도 이미

70%를 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70년대 말에는 90% 수준에 도달하였다. 반면 중농층은 20%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약 절반 가량 감소하였으며, 대농은 토지조사사업 당시 6.5%에서 농지개혁을 전후한 시기에 2% 내외로 감소하였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감소하여 1970년대 후반에는 0.5%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대농의 숫자는 1930년대 농황공황기에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식민지시대에서조차도 절대적으로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각 소유규모별로 평균보유면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소농은 식민지시기에 평균보유규모가 완만하게 하락하였지만, 농지개혁 국면에서 보유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1950년대에는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시 보유규모가 축소하였다. 중농의 경우는 1960년대에 이를 때까지 완만한 하락 추세에 있었긴 하지만, 식민지시대 이래 꾸준히 평균보유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오면서 소농과 마찬가지로 보유규모의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경영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농·상속 등에 따른 소유규모의 영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김성호 외(1984)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대농의 경우 식민지시기에는 평균보유면적이 하락과 상승을 보이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였지만, 농지개혁에 의해 그 규모가 격감하였다. 1960년대 이후 평균보유면적의 증가는 주로 이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¹⁷ 국가는 제외하였다. 1년 동안 VI등급을 유지한 사람은 6명이며, 2년간은 5명이었다.

표 5. 호저면 토지소유자의 연도별 규모 변화 비율

연도	규모확대		규모불변		규모축소		총 합계	신참인원	탈락인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915→22	325	22.2%	887	60.6%	251	17.2%	1,463	242	134
1922→29	546	30.7%	775	43.6%	456	25.7%	1,777	438	294
1929→36	547	28.4%	920	47.8%	456	23.7%	1,923	426	339
1936→43	494	25.1%	1,068	54.3%	405	20.6%	1,967	387	270
1943→50	906	36.9%	1,104	44.9%	448	18.2%	2,458	745	303
1950→57	249	10.7%	1,897	81.6%	178	7.7%	2,324	174	91
1957→64	869	29.6%	1,470	50.0%	601	20.4%	2,940	705	342
1964→71	984	29.1%	1,539	45.5%	860	25.4%	3,383	787	597
1971→77	632	19.2%	2,066	62.9%	589	17.9%	3,287	501	410
합계	5,552	25.8%	11,726	54.5%	4,244	19.7%	21,522	4405	2780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¹⁸

다음은 전체적으로 규모를 확대해간 농민과 축소한 농민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표 5>는 7년 단위로 규모의 변화를 살펴본 것인데, 예를 들면 '1915→22'의 경우 1915년과 1922년 둘 중의 한 해라도 토지소유실적이 있는 사람은 총 1,463명이었고, 그중 규모를 확대한 사람은 325명, 축소한 사람은 251명이라는 것이다. 규모확대자가 축소자보다 많은 것은 앞서 설명한 평균보유면적의 축소경향과 모순된다. 그것은 규모를 확대한 농민 중에는 그 이전에 한 필지도 소유하지 못한 농민이 새롭

게 등장한 경우(신참인원)가 많았기 때문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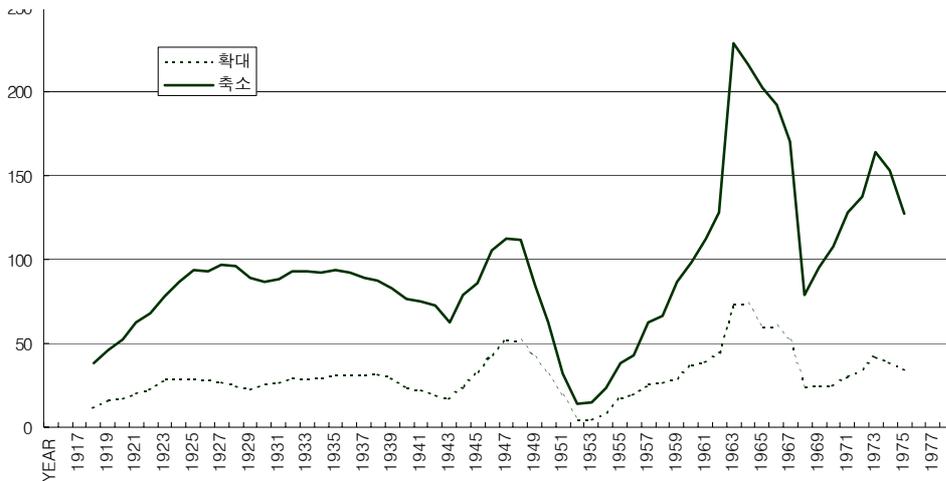
소유규모의 변화와 관련된 표로부터 우리는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1943년부터 1950년 사이에는 증가자의 숫자가 높다. 이것은 농지개혁에 따른 사전방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57년부터 1971년 사이에도 신참인원이 많은데 그것은 농지개혁에 따른 소유권 정리과정에서 등기가 뒤늦게 이루어지고, 사후에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던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조석곤 2001). 둘째, 1950년부터 1957년 사이는 다른 어떤 시기에 비해서도 소유규모의 변동이 적다. 이 시기는 농지개혁 직후 농지의 유동성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토지매매가 위축되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7년 단위가 아닌 매년 단위로 소유규모의 변동을 살펴보자. <부표 2>은 각

¹⁸ 대표적으로 1965년의 증가는 1964년에 비해 3정보 이상 경지보유자의 숫자가 22명에서 15명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대농 보유면적의 부침은 주로 경지정리에 따른 지번 폐쇄나 대장 복구에 따른 국유지면적의 증가 때문이다. 이를테면 1961년의 경우 주산리 토지대장 복구에 따른 국유지 면적의 증가로 평균보유면적이 증가하였다. 1971년은 경지정리에 따른 지번 폐쇄와 1975년은 그 반대로 국유지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1971년 국유지는 약 29정보 감소하였으며, 1975년 국유지는 약 44정보 증가하였다.

¹⁹ 신참인원과 탈락인원을 제외하고 확대인원과 축소인원을 다시 계산하면 각각 1,147명과 1,464명으로 규모를 축소한 농민이 많다.

그림 5. 호저면 규모확대자와 규모축소자의 연도별 추이(5년 이동평균)



등급별로 소유규모가 변동한 사람들을 구한 것이다.²⁰ 이표의 연도별 확대자의 합과 축소자의 합에 대한 5개년 이동평균을 각각 구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5>이다. 매년 단위로 세분하여 보면 모든 연도에서 축소자가 확대자보다 많았다. 이는 당연히 소유규모 영세화로 귀결될 것이다. 물론 이것이 실제 경영규모의 영세화와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첫째, 1943년부터 1948년에 이르는 확대 및 축소자의 증가현상이다. 확대자의 대부분은 1정보 미만의 I, II등급의 해당자들이었다.²¹ 식민지지주

제의 쇠퇴와 농지개혁에 대한 예상이 맞물려 영세농의 토지집적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확대가 모든 영세농층에 일반적이지 않았음은 같은 기간 동안 축소자의 수가 확대자의 수를 초과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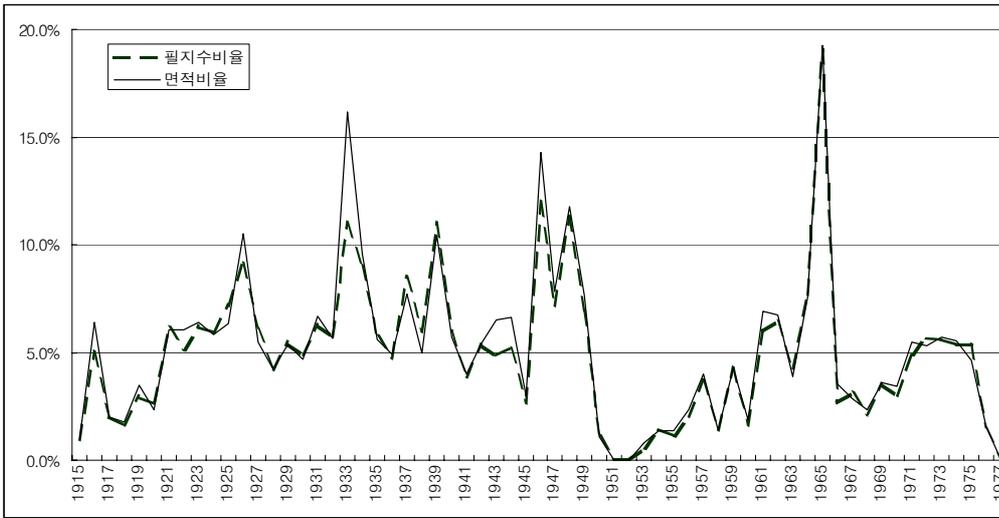
둘째, 1948년 이후 1953년까지 규모 변동자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은 것은 첫째의 기간과 비교할 때 매우 대조적이다. 전쟁 중이라고는 하지만 1951년과 1952년 모두 합하여 규모변동자가 고작 축소자 2명에 불과한 것은 농지개혁에 따른 토지유동성의 급격한 하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1960년대 중반의 상승은 분배농지의 등기절차와 그것을 반영한 토지대장 기록변화 때문이다. 1961년에 제정된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613호, 1961. 5. 5.)은 2년간 유효한 한시법이였으나, 등기실적이 부진하자 1964년 12월까지로 연장하였으며(법률 1340호, 1963.

²⁰ 이 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1916년의 IV등급에 있는 확대 1명과 축소 3명은 1915년 토지보유면적이 IV등급에 해당하는 농민들 중에서 V등급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한 사람이 1명이며, III등급 이하로 규모가 축소된 사람이 3명이라는 의미이다.

²¹ <부표 1>로부터 이들 수치를 계산하면, 1943-48년 동안 각각 21명중 17명, 26명중 21명, 15명중 13명, 50명중 44명, 51명중 46명, 71명중 63명이었다.

그림 6. 호저면 토지의 연도별 매매비율



5. 2), 다시 196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였다.(법률 1671호, 1964. 12. 31.)(조석곤 2001: 408-9)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세소유자의 일부가 대거 소유자에서 탈락함으로써 소유규모의 위축이 확대된 것이다.²² 이것이 등기절차와 관련되어 있음은 <부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6년 이후 변동폭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²³ 이제 각 연도별로 매매가 이루어진 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²⁴ 1915년부터 1977년까지 필지수는

평균 7,269필지에 3,996,810평이었다. 판매가 이루어진 필지는 평균 357필지에 208,425평이었으며, 비율로는 각각 4.9%, 5.2%를 차지하고 있다.²⁵

<그림 6>을 보면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3개의 시기를 파악할 수 있다. 첫째는 1930년대 중반으로 소화공황기의 농업위기의 산물이며, 1940년대 후반은 농지개혁을 예상한 사전 방매의 효과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중반은 농지개혁 완료에 따른 등기이전이 이 시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1950년대에 이례적으로 토지매매율이 낮은 것은 농지개혁법이 토지의 유동성을 극히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²² 이 상황은 수분배 대상 농민과 등기상의 농민이 변동하였음을 시사한다. 그 사유로는 수배 농민의 사망 등에 따른 등기명의인의 변경 등도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여의하지 못하여 수분배농민이 변동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추후의 변동 사례연구가 요구된다.

²³ <그림 6>에서 1965년 주위로 축소 폭이 커진 것은 5개년 이동평균을 구했기 때문이다.

²⁴ 매매 필지는 토지대장상에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매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상속이나 증여 등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을 구분할 수 없었다.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본고의 계산방식은 전체적으로 매매 필지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²⁵ 이 수치는 용문면의 8.1%, 9.5% 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조석곤 2001).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원주시 호저면 토지대장을 자료로 하여 1915년부터 1977년에 이르는 토지소유구조의 변동과정을 살펴보았다. 토지소유규모의 장기추이를 검토한 결과 일제시대에서 지금에 이르는 토지소유구조는 1930년대까지의 식민지지주제의 확대기와 1940년대 초부터 1960년대 후반에 이르는 식민지지주제의 쇠퇴와 자작농체제유지기, 1970년대 이후의 농지유동화의 증대와 자작농체제 해체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시기의 경지이용은 상당히 안정적이었지만 194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전쟁기를 거칠 때까지 경지가 임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이 시기가 농업생산력의 후퇴기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토지소유의 불평등도는 크게 1940년대 초까지의 악화기, 1960년대 후반까지의 완화기, 1970년대 이후의 再惡化期로 구분된다. 예천군 용문면의 사례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지주제가 1940년대 초반에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농지개혁에 의한 농지유동성의 제약효과가 매우 두드러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940년대 초반 이후 식민지지주제가 쇠퇴한 것은 그 쇠퇴가 일제가 시행한 공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계층별 소유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유규모의 영세화가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토지대장의 장부상 성격에도 일부

원인이 있겠지만, 농촌인구 증가에 비해 경지증가가 미치지 못하는 상황의 당연한 귀결이다. 농지개혁을 대비한 지주층의 사전방매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였고, 농지개혁을 통한 지주계급의 해체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소유규모의 전반적 영세화 속에서도 농지개혁 직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중소농이 보유면적에서 안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1960년대 후반 이후 다시 하강분해해가기 시작하였다.

토지대장을 이용한 본고의 분석방법은 분석단위를 면으로 확장함으로써 토지소유구조 변화의 전반적인 추세나 방향을 보다 잘 살펴볼 수 있으며, 예천군 사례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공통된 특성과 지역간 차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제도 연구로부터 추론한 농업변화의 양상을 지역단위에서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 그것의 지역현장에 적용될 때 파급되는 효과의 지역별 편차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물론 이와 같은 본고의 분석은 토지대장이 지니는 장부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960년대 초반 소유면적의 급등, 1960년대 중반 소유권의 급변은 장부의 결락, 등기제도의 특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실상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또 그 자료의 특성상 농업경영에 관한 내용을 다룰 수 없었던 것도 본고의 한계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에 관한 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이 분석 결과를 토지소유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부 록

부표 1. 3년 이상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지주 명부

성명	누적면적	존속년수	평균면적	존속기간
권만주	65,230	4	16,308	1915-18
권정무	135,456	8	16,932	1929-36
김귀순	83,713	4	20,928	1931-34
김동혁	94,623	6	15,771	1933-38
김두임	351,246	10	35,125	1933-42
김선진	528,228	19	27,801	1916-34
김수근	52,968	3	17,656	1975-77
김수홍	126,387	5	25,277	1935-39
김종현	60,196	4	15,049	1924-27
김주일	48,438	3	16,146	1943-45
김창하	74,947	3	24,982	1946-48
노복산	508,501	22	23,114	1937-41,1943-59
대동학원	463,764	27	17,176	1935-61
류재일	76,705	3	25,568	1942-44
류정열	762,292	27	28,233	1915-41
박봉상	371,106	18	20,617	1915-32
박상무	163,921	8	20,490	1931-38
박순형	429,632	16	26,852	1915-30
박한희	324,118	7	46,303	1915-21
변필현	259,439	16	16,215	1915-30
손창원	134,432	3	44,811	1923-25
식촌다조	289,495	12	24,125	1922-33
식촌요	847,625	25	33,905	1934-58
신인선	134,860	8	16,858	1939-46
신재원	73,798	4	18,450	1933-36
안명달	135,765	7	19,395	1915-21
원유상	477,987	29	16,482	1915-43
원정희	904,995	50	18,100	1915-64
유문옥	111,106	7	15,872	1915-21
이경녀	217,030	6	36,172	1940-45
이교근	599,029	26	23,040	1923-48
이근명	127,529	8	15,941	1915-22
이금연	505,806	27	18,734	1923-49
이덕인	2,124,176	18	118,010	1915-32
이동연	312,345	20	15,617	1921-43
이병윤	369,308	11	33,573	1941-55
이병의	257,508	13	19,808	1948-60
이병훈	157,257	10	15,726	1924-33

성명	누적면적	존속년수	평균면적	존속기간
이영관	139,005	9	15,445	1969-77
이우현	421,099	11	38,282	1926-36
이원선	91,680	6	15,280	1915-20
이종대	175,779	11	15,980	1929-39
이종민	326,696	10	32,670	1933-42
이창연	1,810,848	42	43,115	1915-56
이필우	209,124	13	16,086	1934-44,1946-47
이학연	309,213	17	18,189	1915-23,1940-47
이현갑	78,501	4	19,625	1944-47
이형선	275,202	15	18,347	1915-29
임면상	1,280,970	19	67,419	1915-33
임병기	74,644	4	18,661	1942-45
임병달	2,096,283	21	99,823	1926-46
임용상	715,128	32	22,348	1915-46
임익상	696,592	10	69,659	1916-25
임정현	456,987	23	19,869	1926-48
임중상	193,021	11	17,547	1915-25
장기동	560,396	33	16,982	1935-66
전동혁	415,622	18	23,090	1921-38
정규동	415,079	10	41,508	1939-48
정만복	1,153,976	47	24,553	1915-61
정완시	200,048	9	22,228	1915-23
정익섭	369,030	24	15,376	1920-43
정태섭	870,351	24	36,265	1915-38
정태완	90,552	6	15,092	1940-45
정호준	616,674	22	28,031	1915-36
정호필	100,814	6	16,802	1915-20
조순형	91,525	5	18,305	1939-43
조준호	210,218	4	52,555	1942-45
지영식	155,826	10	15,583	1948-57
진덕자	382,726	10	38,273	1933-42
천주교회	155,496	6	25,916	1938-43
초계정씨	687,614	41	16,771	1937-77
최성희	288,236	18	16,013	1939-56
최양순	508,970	16	31,811	1915-30
탁희준	376,906	10	37,691	1938-47
함도환	136,007	6	22,668	1915-20
함의동	203,910	13	15,685	1915-27
향천미내	106,706	3	35,569	1943-45

부표 2. 호저면 토지소유규모별 규모확대자와 규모축소자의 연도별 추이

연도	I		II		III		IV		V		VI		확대합	축소합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1916	2	8	4	9	0	5	1	3	1	4	0	1	8	30
1917	6	11	7	17	3	8	2	1	0	4	0	0	18	41
1918	1	9	2	12	3	4	1	4	0	2	0	0	7	31
1919	5	7	9	17	4	12	1	5	0	3	0	1	19	45
1920	2	14	1	13	2	7	1	5	1	4	0	0	7	43
1921	16	17	6	23	5	14	2	6	1	7	0	3	30	70
1922	10	15	6	32	3	13	1	7	2	1	0	4	22	72
1923	5	21	9	31	3	17	3	8	2	1	0	3	22	81
1924	13	15	9	32	6	14	0	4	3	6	0	2	31	73
1925	22	37	10	22	4	20	2	12	0	2	0	0	38	93
1926	15	38	9	41	5	20	2	7	0	3	0	5	31	114
1927	10	28	6	49	5	20	0	8	0	2	0	0	21	107
1928	7	27	10	32	1	10	2	5	0	1	0	2	20	77
1929	5	30	12	40	6	14	4	6	1	3	0	0	28	93
1930	11	31	6	34	3	16	4	7	0	1	0	1	24	90
1931	13	31	5	24	1	11	3	7	0	3	0	4	22	80
1932	12	27	13	36	7	19	1	7	0	5	0	0	33	94
1933	12	21	10	36	1	16	2	2	2	7	0	3	27	85
1934	22	38	13	45	5	17	1	5	0	9	0	3	41	117
1935	6	42	11	26	4	11	0	4	0	3	0	2	21	88
1936	15	30	5	21	3	17	2	7	0	2	0	0	25	77
1937	16	33	19	39	3	16	2	5	1	5	0	4	41	102
1938	9	24	9	27	6	17	3	3	0	5	0	1	27	77
1939	20	34	13	31	3	16	0	10	5	6	0	4	41	101
1940	14	25	7	31	4	15	1	3	1	2	0	4	27	80
1941	8	19	3	11	2	13	0	5	0	4	0	1	13	53
1942	7	31	1	24	1	8	1	4	0	4	0	2	10	73
1943	12	26	5	27	2	6	1	2	1	3	0	4	21	68
1944	8	36	13	25	2	14	2	5	1	4	0	5	26	89
1945	7	12	6	6	1	3	1	2	0	3	0	2	15	28
1946	29	47	15	50	4	24	0	6	2	3	0	7	50	137
1947	30	43	16	30	3	23	2	5	0	4	0	3	51	108
1948	40	55	23	63	6	28	1	7	1	8	0	5	71	166
1949	43	44	29	43	3	17	1	8	0	8	0	4	76	124
1950	6	8	2	5	2	4	0	1	0	3	0	1	10	22
195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952	0	0	0	0	0	1	0	1	0	0	0	0	0	2
1953	3	3	3	5	0	3	1	2	0	1	0	0	7	14
1954	3	13	5	11	0	5	0	2	0	1	0	0	8	32

연도	I		II		III		IV		V		VI		확대합	축소합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확대	축소		
1955	4	4	2	14	2	3	0	2	0	2	0	0	8	25
1956	10	14	5	16	5	8	0	2	0	3	0	0	20	43
1957	25	24	14	30	5	9	3	9	0	5	0	2	47	79
1958	7	9	4	10	2	9	1	3	0	2	0	1	14	34
1959	27	53	11	42	2	19	0	13	0	3	0	1	40	131
1960	11	10	1	20	0	7	1	4	0	2	0	1	13	44
1961	18	42	7	79	3	11	3	8	0	4	0	1	31	145
1962	54	36	34	55	2	33	0	10	0	2	0	2	90	138
1963	14	53	6	38	2	12	0	2	0	1	0	0	22	106
1964	43	93	20	77	4	27	1	7	0	4	0	0	68	208
1965	94	276	54	189	7	61	2	12	0	9	0	1	157	548
1966	21	38	5	33	1	7	2	2	0	1	0	0	29	81
1967	15	28	5	22	4	9	1	5	0	2	0	1	25	67
1968	14	23	7	27	1	6	0	1	0	0	0	0	22	57
1969	15	43	7	40	1	12	1	4	0	1	0	0	24	100
1970	14	47	6	31	1	8	1	1	0	2	0	0	22	89
1971	23	78	8	64	1	14	1	5	0	1	0	0	33	162
1972	13	46	10	54	0	25	2	6	0	1	0	0	25	132
1973	30	84	12	51	4	22	1	1	0	1	0	0	47	159
1974	25	76	16	50	2	15	0	3	0	1	0	0	43	145
1975	44	129	14	71	3	17	0	2	1	2	0	0	62	221
1976	11	56	7	43	0	6	1	2	0	1	0	0	19	108
1977	0	0	0	3	0	0	0	0	0	0	0	0	0	3
계	997	2212	587	2079	168	838	72	295	26	187	0	91	1850	5702

참 고 문 헌

김성호. 1985. “한국토지제도의 연속성과 단절성.” (상, 하). 『농촌경제』 8(3-4).

김성호 등. 1989. 『농지개혁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호 등. 1984. 『農地制度 및 農地保全에 관한 調査研究』,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부. 각 연도. 『농가경제조사결과보고』.

박석두. 1987. “농지개혁과 식민지지주제의 해체.” 『경제사학』 11.

박섭, 1994. “식민지후기의 지주제-실태와 정책.” 『경제사학』 18.

小早川九郎. 1944. 『朝鮮農業發達史』. 조선농회.

신기욱. 2001. “농지개혁의 역사사회학적 고찰.” 홍성찬 (편). 『농지개혁연구』. 연세대학교출판부.

이송순. 1995. “일제말(1937-45) 조선의 농촌경제 변화: 미곡공출을 중심으로.” 『사총』 44.

이종범. 1988. “1915-45년 농지소유구조의 변동.” 『全南 務安郡 望雲地域 農村社會 構造變動研究』.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_____. 1989. “1915-1950년대 농지소유구조의 변동.” 『공단형성과 지역사회구조 변동에 관한 연구』. 광주.

이지수. 1994. 『해방 후 농지개혁과 지주층의 자본전환 문제』.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장상환. 1999. “농지개혁과 한국자본주의의 발전.” 『쟁점 한국근현대사』. 한국근현대사연구소.

장시원. 1995. “지주제 해체와 자작농체제 성립의 역사적 의의.” 『광복50주년기념논문집』 3. 경제.

전강수. 1993. “식민지 조선의 미곡정책에 관한 연구: 1930-1945년을 중심으로.” 서울대 경제학박사학위논문.

정승진. 1997. “일제시기 식민지지주제의 기본 추이.” 『역사와현실』 26. 역사비평사.

정연태. 1995. “1930년대 일제의 식민농정에 대한 재검토.” 『역사비평』 1995(봄).

조석근. 2001. “토지대장에 나타난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8. 『조선토지조사사업보고서』(본문에서는 『보고서』라 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9. 『농지개혁사연구』.

홍성찬. 1992. 『韓國近代農村社會의 變動과 地主層』. 지식산업사.

<p>■ 원고 접수일 : 2005년 3월 14일 원고 심사일 : 2005년 3월 22일 심사 완료일 : 2005년 6월 22일</p>
--